

의안번호	2204630
의 퇴 인	황명선의원
회 답 일	2024. 10. 23.
추계번호	24B42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5조제4항 신설(동물의 기증·분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함. 다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5조제4항 신설(동물의 기증·분양)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동물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동물의 기증·분양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을 보호하고 있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¹⁾하고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한 경우 등

1) 법 제40조(공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표 1] 현행법 상 동물의 소유권 취득 및 기증·분양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소유권 취득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소유권 취득 동물의 분양·기증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정리 <www.law.go.kr>

- 한편, 현행법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 중 질병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기증·분양이 곤란한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안락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²⁾

2) 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료비, 치료비, 운영경비 등 지방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이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하더라도 인도적인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음³⁾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30일 이상 보호하게 될 동물 유형 및 그 수, 해당 동물의 30일 이상 생존일수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정보를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중 인도적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20,346건⁴⁾, 평균 보호일수는 27.8일,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동물 1마리당 보호비용은 33.1만원⁵⁾ 등임
 - ※ [참고자료] 동물 구조 및 보호 현황(2023년) 참고

3) 개정안의 제안이유:

(중략)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후략)

4)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마릿수: ('21) 118,273마리, ('22) 113,440마리, ('23) 113,072마리

5) 1마리당 평균비용: 동물보호센터 비용/구조동물 마리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동물 구조 및 보호 현황(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⁶⁾

□ 동물 구조 및 보호 현황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단위: 마리, %)

구분	총 구조동물 수	개	고양이	기타*	전년 대비 총 구조동물 수	
					증감	증감률
2023	113,072	80,467	30,889	1,716	-368	-0.3%
	100.0%	71.2%	27.3%	1.5%		
2022	113,440	80,393	31,525	1,522	-4,833	-4.1%
2021	118,273	84,723	32,098	1,452	-12,128	-9.3%

* 토끼, 햄스터 등

<축종별 구조동물 보호·관리>

(단위: 마리)

구분	총 구조동물수	보호중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기타*
합계	113,072	15,093	13,628	27,343	3,318	31,238	20,346	2,106
개	80,467	13,150	13,125	18,176	2,733	14,055	19,065	163
고양이	30,889	1,792	390	8,277	491	16,873	1,164	1,902
기타*	1,716	151	113	890	94	310	117	41

* 포획불가, 고양이 방사 등

** 토끼, 햄스터 등

<구조동물 보호·관리 현황>

(단위: 마리)

구분	총 구조동물수	보호중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기타*
2023	113,072	15,093	13,628	27,343	3,318	31,238	20,346	2,106
2022	113,440	14,157	14,031	31,182	2,375	30,490	19,043	2,162
2021	118,273	13,910	14,111	37,988	1,404	30,529	18,604	1,727

* 포획불가, 고양이 방사 등

6) 농림축산검역본부, 「'23년 동물의 등록, 구조·보호 등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4.7.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직영 및 지정>

(단위: 개소, %)

구분	계	지자체 직영*	위탁**
전국	253	71	182
	100.0%	28.1%	71.9%
서울	29	2	27
부산	16	0	16
대구	9	0	9
인천	16	0	16
광주	1	0	1
대전	1	1	0
울산	16	0	16
세종	1	0	1
경기	38	12	26
강원	19	9	10
충북	11	2	9
충남	16	4	12
전북	14	6	8
전남	23	11	12
경북	22	12	10
경남	20	11	9
제주	1	1	0

* 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시·도, 시·군·구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시설*>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지자체 직영	위탁	전년대비 증감
전국	228	71	157	-11
	100.0%	31.1%	68.9%	-4.6%
서울	16	2	14	-4
부산	5	0	5	0
대구	23	0	23	-1
인천	12	0	12	0
광주	1	0	1	0
대전	1	1	0	0
울산	12	0	12	-2
세종	1	0	1	0
경기	25	12	13	-1
강원	18	9	9	0
충북	9	2	7	0
충남	16	4	12	-1
전북	24	6	18	-2
전남	22	11	11	0
경북	22	12	10	-1
경남	20	11	9	1
제주	1	1	0	0

* 하나의 시설이 각기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로 중복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수치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만 원, 일, %)

구분	종사 인원 (명)	비용(만 원)		평균 보호 기간 (일)	전년 대비 인원		전년 대비 총비용(만 원)		전년 대비 보호기간(일)	
		총비용	마리당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전국	984	3,738,512	33.1	27.8	91	6.8%	790,511	26.8%	1.8	6.9%
서울	63	133,118	25.7	14.6	16	34.0%	5,262	4.1%	1	7.1%
부산	30	65,032	12.2	19.4	1	3.4%	-4,642	-6.7%	1	5.6%
대구	33	95,652	21.0	16.8	-2	-5.7%	3,379	3.7%	3	21.4%
인천	37	84,882	14.8	19.9	-5	-11.9%	591	0.7%	1	5.3%
광주	13	71,000	23.3	20.2	0	-	63,900	900%	-	-
대전	31	145,741	84.1	26.1	0	-	64,648	79.7%	-	-
울산	22	29,278	9.9	23.0	-10	-47.6%	-4,394	-13%	1	4.5%
세종	4	13,277	22.6	38.8	3	300.0%	3,937	42.2%	4	11.4%
경기	234	1,091,341	49.7	25.5	41	19.2%	403,923	58.8%	3	13%
강원	71	259,840	44.8	32.4	-7	-4.3%	64,065	32.7%	1	3.2%
충북	39	127,216	27.9	24.8	1	2.6%	25,958	25.6%	-1	-3.8%
충남	67	228,570	26.1	34.9	16	31.4%	-4,137	-1.8%	4	12.9%
전북	109	326,684	36.0	33.2	4	3.8%	-4,134	-1.2%	3	10%
전남	50	270,498	27.9	37.8	5	11.1%	80,658	42.5%	6	18.8%
경북	75	328,331	39.1	35.7	17	29.3%	-5,761	-1.7%	1	2.9%
경남	87	392,423	35.0	33.0	9	11.5%	95,069	32%	1	3.1%
제주	19	75,626	16.9	23.1	2	11.8%	2,188	3%	-2	-8%

* 마리당 평균비용: 동물보호센터 비용/구조동물 마리수